



Korean Tax Newsletter

5 August 2026

CONTENTS

세법개정

- 2026 년 세제개편안 발표

세무동향

- 정부, 2026 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국세청,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을 위한 5 대 핵심과제 추진
- 국세청, 12 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예규판례

○ 법원

- 상호 주식취득과 모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인지 및 해당 주식이 법인세법상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로 결제하고, 원고가 해당 포인트 결제액을 보전받은 경우 그 보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경쟁청구 당시 기술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판청구 진행 중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지 않은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 25 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영세율 상호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수체계 개편으로 기본급에 편입된 중식비를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정경제부

- 상증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 제 3 호의 2 신설 전 불균등 감자 거래에 대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 및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여부
-

○ 국세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조특법 제 16 조의 4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 16 조의 3 에 따른 납부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로 과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세법개정

2026 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는 8.3.(월) 「2026 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본 개편안은 입법예고(8.4. ~ 8.20.),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3.(목)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6 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바로가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 (지원분야) 중요성·유망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 대 분야* 적용

* ① 태양광발전, ② 풍력발전, ③ 이차전지, ④ 반도체, ⑤ 핵심소재, ⑥ AI 로봇부품

-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

1) [국내생산] ① + ②

①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핵심공정, 적격 생산비용, 국내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②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2) [국내판매] ① ~ ④ 모두 충족

①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

②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③ 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중고품이 아닐 것

- (적용기한) ‘36.12.31.

-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① × ② × ③

① (기준 공제금액)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② (지방우대)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

구분*	계수
① 수도권	1.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③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 년은 공제액 점감

* ('34년)75% ⇒ ('35년)50% ⇒ ('36년)25% ⇒ ('36.12.31.) 일몰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한도): Min(①, ②)

①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②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지역 제한〉(조특법 §130③)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조특법 §127④)

- 중복배제 되는 공제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132·§144)

-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조특법 §29의2)

- (수정신고)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

- (대상자)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내국인(부과 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만 해당)

- (납부세액)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소득법 §33의2, 법인법 §27의2)

〈손금산입 한도 조정〉

- ①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 ② (① 외) 1대당 연 700만원

-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경우 연 400만원

〈개정이유〉 친환경차 사용 촉진 지원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10)

〈수소 분야 확대 개편〉

- 수소 분야 ⇒ 미래형 에너지 분야(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지원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19)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공제 대상 추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한정)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개정이유〉 자율주행 승용차 연구개발 지원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상세 감면〉

- 공급안정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 '20% ⇒ 10%' 적용

〈개정이유〉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사업재편계획 이행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를 위한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대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 과 '석유화학기업' 추가

-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 의 30)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상)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 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
- (요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 년 이상 계약 체결
- (공제율)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사후관리)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취소 또는 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조특법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중소기업 감면율의 50%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 년(상장기업 7 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본점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	중	점감(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 개 업종	2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제조업 등 나머지 46 개 업종	30	15	7.5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5 의 6·§25 의 8)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공제율 12.5%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 년(상장기업 7 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영상콘텐츠)

구분(%)	중소	점감(신설)	중견·대
기본공제	15	12.5	10
추가공제*	15	12.5	10

* 국내 제작비 비율 80%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웹툰콘텐츠)

구분(%)	중소	점감(신설)	중견·대
기본공제	15	12.5	10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28 의 5)

〈특례 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추가〉

- (대상 자산 추가)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예)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안전시설 투자 지원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3)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과세특례 상시화〉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기업 설립 후 10 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 7년 ⇒ 10년

- (적용기한) '28.12.31 ⇒ 삭제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3의 2)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완화〉

- (공제율)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7%*

* 5% ⇒ 7%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기업 설립 후 10 년* 이내에 유상증자

* 7년 ⇒ 10년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61)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 확대〉

- 생산적 영역 대여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확대
(생산적 영역 외) 채권잔액×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생산적 영역*) 채권잔액×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120%]

*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첨단전략산업자금 지원 승인 연계대출

〈개정이유〉 생산적금융 지원

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이하**<개정이유>**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기타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3% ⇒ 2%**<개정이유>**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 부담 완화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6.12.31. ⇒ '28.12.31.**<개정이유>** 외식 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 §52, 소득령 §112)
<적용대상 확대>
 - (대상) 대상 추가(②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
 -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
 - i)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ii)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공제한도) ① + ② 합산 400만원**<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 (대상)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10·§24)
<공제율 지방우대: 기준 공제율* × 지방우대계수>
 - * (현행) R&D 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1~30%)
 - (지방우대계수)

구분*	계수
① 수도권	1.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
 - (지역별 구분경리 의무화) 지방우대 적용을 위해 ①~④ 지역 사업장별 구분경리
-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특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 우대(감면기간, 감면율)

구분*	청년	고령자 등**
① 수도권	5년, 90%	3년, 7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6년, 90%	3년, 75%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7년, 90%	3년, 80%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 및 우대유형 추가〉

- (지방우대)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감면율 상향
- (우대유형) 점프업* 중소기업,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추가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 등 지원패키지 사업(중기부)

** 세부 업종은 중기부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분*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 지역	③ 기타 비수 도권, 비수도 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④ 기타 비수 도권 우대지 역
		과밀	일반			
중소기업	일반	-	25%	50%	60%	7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청년 신산업					
창업보육		-	25%	50%	60%	7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

-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추계과세 시 배제되는 세제지원 추가〉(조특법 §128)

-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

〈사후관리 강화〉(조특법 §146② 신설)

- (위장이전 사후관리)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한 경우 지방이전 특례**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 1) (공장) 이전한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2) (본사) 본사 또는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는 사무소

** (현행) §63·63 의 2 + (추가) §60·6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기간(동일사업장 설치 과세연도 및 이전 4 개 과세연도로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한정)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정

-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 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 (현행) §12 의 2, §64, §99 의 9, §121 의 8·9·17·20·21·22·33 + (추가) §60, §61, §85 의 8, §104 의 24, §121 의 34, §121 의 3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기간(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 개년)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정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감면한도 적용: ① + ②〉(조특법 §134 신설)

* (현행) §12 의 2, §63, §63 의 2, §64, §99 의 9, §121 의 8·9·17·20·21·22·33 + (추가) §104 의 24, §121 의 36

- ①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 만원

청년, 서비스업, 연구개발 우수 인력*: 2,000 만원

* §12 의 2 만 해당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 지역 환류 의무화〉(조특법 §145·§146②)

- (환류의무)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에 환류한 금액(①~④ 합계액)이 감면세액*의 30% 이상(기준금액)일 것

*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 ① (투자)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
- ② (R&D)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 ③ (고용) 신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②는 제외)
- ④ (상생) 해당 지역 소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금

- (추징기준) 환류액이 기준금액 미달 시 미달액 추징

- (검증방법) 해당 기업은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조특법 §132)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63 의 2)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85 의 8)

-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특례*(§104 의 24)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121 의 34)

-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 특례*(§121 의 36)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 의 34)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세제 합리화

○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95②·③)

- ① (명칭) 장기거주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 ② (명칭) 장기보유 소득공제
(대상) 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

〈1 세대 1 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 (공제율) ① + ② (기본요건: 3 년 이상 보유 + 2 년 이상 거주)

구분 \ 양도시점	'27.12.31. 까지	'28.1.1. ~ '28.12.31.	'29.1.1.부터
① 거주	연 4% 최대 40%	연 6% 최대 60%	연 8% 최대 80%
② 보유	연 4% 최대 40%	연 2% 최대 20%	-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단계적 조정〉(소득법 §95②)

- (공제율) ('28 년) ① 거주공제율과 ② 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 ⇒ ('29 년 이후) ① 거주공제율 (기본요건: 3 년 이상 보유)

구분 \ 양도시점	'27.12.31. 까지	'28.1.1. ~ '28.12.31.	'29.1.1.부터
① 거주*	-	연 2% 최대 30%	연 2% 최대 30%
② 보유	연 2% 최대 30%	연 1% 최대 15%	-

* 2 년 이상 거주 시에만 적용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95⑥)

- (공제한도) ①과 ② 각각 적용
- ① (인별 연간) ('28 년) 20 억원 ⇒ ('29 년 이후) 10 억원
- ② (양도 물건별*) ('28 년) 20 억원 ⇒ ('29 년 이후) 10 억원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도 적용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종과 한시 완화(소득법 §104⑦)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과세율 한시 완화〉

- (1 세대 2 주택)*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종과세율 한시 완화(보유기간 2 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양도기간	종과세율
'27.1.1.~'27.12.31.	+5%p
'28.1.1.~'28.12.31.	+10%p

* 기본세율(6~45%) + 20%p

- (1 세대 3 주택 이상)*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종과세율 한시 완화(보유기간 2 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양도기간	종과세율
'27.1.1.~'27.12.31.	+10%p
'28.1.1.~'28.12.31.	+15%p

* 기본세율(6~45%) + 30%p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중부법 §7①)

〈과세대상 조정〉

- ① (1 세대 1 주택자)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 억원 초과(시가 약 20 억원 초과)
- ② (① 외)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9 억원 초과(시가 약 13 억원 초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중부법 §8①)

〈개인의 기본공제금액 조정〉

- ① (1 세대 1 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거주) 14 억원, (비거주) 9 억원
- ② (① 외) 4 억원 + (5 억원 x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중부법 §8①·§13①·②, 중부령 §2 의 4)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단계적 상향〉

- (범위 조정) 60% ⇒ 70%
 - (단계적 상향)
 - ① (3 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27 년) 70% ⇒ ('28 년이후) 80%
- * 1 세대 1 주택자 제외
- ② (① 외) 7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중부법 §9①·②)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폐지 및 과세표준 6~12 억원 구간 세율 인상〉

- ('27 년)

과세표준	세율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
3 억원 이하	0.5%	
3 억원 초과 6 억원 이하	0.7%	
6 억원 초과 12 억원 이하	1.3%	
12 억원 초과 25 억원 이하	1.5%	2.0%
25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2.0%	3.0%
50 억원 초과 94 억원 이하	2.7%	4.0%
94 억원 초과	3.5%	5.0%
법인*	3.5%	5.0%

* 공익법인 등: 0.5 ~ 3.5% / 0.5 ~ 5.0%

- ('28 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3 억원 이하	0.5%
3 억원 초과 6 억원 이하	0.7%
6 억원 초과 12 억원 이하	1.3%
12 억원 초과 25 억원 이하	2.0%
25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3.0%
50 억원 초과 94 억원 이하	4.0%
94 억원 초과	5.0%
법인*	5.0%

* 공익법인 등: 0.5 ~ 5.0%

○ **종합부동산세 1 세대 1 주택 세액공제 개편**(중부법 §9⑤·⑧·⑨)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전환〉

- 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
- ('27 년) ①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②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 ('28 년 이후) ② 거주공제만 적용

보유/거주기간	① 보유공제	② 거주공제
5~10 년	10%	20%
10~15 년	20%	40%
15 년 이상	25%	50%

〈금액 한도 신설〉

- ('27 년) 800 만원 ⇒ ('28 년 이후) 600 만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중부법 §10·§15)

〈세부담 상한 조정〉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 ⇒ 20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104 의 19, 중부령 §7④)

〈과세특례 대상 확대〉

- (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가

○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중부법 §14①)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 종합합산토지 과표 45 억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5 억원 이하	1%
15 억원 초과 45 억원 이하	2%
45 억원 초과	4%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법인법 §55 의 2①)

〈추가과세 세율 상향〉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 10% ⇒ 20%
-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개편

○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 §18 의 2①, 상증령 §15)

〈'가업'의 정의 신설〉

-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 ③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 ④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 ⑤ ①~④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
 - ①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 ②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18 의 2①·별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서 규정

- 대분류 등 기준 16 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세세분류 기준 727 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개정이유〉 가업상속 공제업종 범위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상증법 §18 의 2⑫, 상증령 §15)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 (구성)* 위원장(재경부 1 차관), 정부 및 민간위원

*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

- (심사사항) ①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

- (① 관련 심사절차)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의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법 §18 의 2①, 상증령 §15⑥)

〈피상속인 요건 강화〉

- 30 년 이상 계속 경영(20 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 (부족기간) 30 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30 년* 이상 계속 보유

* 10 년 이상 ⇒ 30 년 이상(단, 20 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공제 적용 시 20 년 이상)

- 일정기간(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0 년 중 15 년 이상* 등) 대표이사로 재직

* 10 년 중 5 년 이상 ⇒ 30 년 중 15 년 이상

〈상속인 요건 강화〉

-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상* 가업에 종사

* 2 년 이상 ⇒ 5 년 이상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상증법 §18 의 2②)

〈한도 계산방식 변경 및 한도 상향〉

- 피상속인 경영연수 x 20 억원 (한도: 1,000 억원)

〈개정이유〉 장수기업 지원 확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 §18 의 2⑥, 상증령 §1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상향〉

- (사후관리 기간) 5 년 ⇒ 10 년

- 피상속인이 20 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만큼 기간연장

* (부족기간) 30 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 (추징 예외)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30 의 8 신설)

- (요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업승계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
 - 1) [피승계기업] ①·②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2) [매도자]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 +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3) [매수자] ① 또는 ②
 - ①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개인·기업
 - ②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
- (특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1) [대상] 법인주식등*, 개인사업자사업용 자산*
 -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준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 [세율] 20% 세액감면
 - 3) [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x 연 5천만원
 -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적용
- (사후관리)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 (적용기간) '28.1.1. ~ '30.12.31.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조특법 §30 의 8·§132)

- (요건)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승계(매도자, 매수자 및 피승계기업의 세부 요건은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
- (특례)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필요
 -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 배제(조특법 §132)
-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 ① ~ 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①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 감소
 - ②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③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 ④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
 - ⑤ 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
- (신청방법)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 (적용기간) '28.1.1. ~ '30.12.31.

〈**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 비과세·감면 정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8 의 2)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적용 과세특례**〉

- (단일세율 상향) 19% ⇒ 21%
- (적용기한 연장) '26.12.31. ⇒ '29.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 §24①, 조특령 별표 7·7 의 2, 조특칙 별표 6·6 의 2)

〈(R&D 비용 세액공제) 세부기술별 적용기한 도입〉

세부기술 선정연도	적용기한	
	반도체	반도체 外
‘17 년 이전	‘27.12.31.	
‘18 ~ ‘20 년	‘28.12.31.	
‘21 년	‘29.12.31.	‘29.12.31.
‘22 년	‘30.12.31.	
‘23 년 이후	‘31.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및 세부시설별 적용기한 도입〉

-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적용기한(‘29.12.31.) 추가

구분	적용기한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29.12.31.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9.12.31.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9.12.31.

- (세부시설별 적용기한) 선정연도에 따라 차등

세부시설 선정연도	적용기한
‘17 년 이전	‘27.12.31.
‘18 ~ ‘20 년	‘28.12.31.
‘21 년 이후	‘29.12.3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관리 효율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29 의 8①·⑤)

〈적용대상 합리화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세제 합리화

○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 §63⑤, 상증령 §52 의 2)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 [현행]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원칙: 시가*)
 -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 개월간(현행 평가기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예외) 주가 누르기 해당 시 새로운 주식 평가방법 적용
 - 1) [추정요건] ① 또는 ②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 ① (저 PBR) 최근 13 반기 중 12 반기의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
 -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 GICS(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업종구분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
 - ② (저 PBR 외) 행위 요건(i) + 주가 하락 요건(ii)
 - i)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 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써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 ii) 시가평가액(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이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 개월간, 1 년간, 2 년간 또는 3 년간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에 비해 30% 이상 낮음
 - 2)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 심의·확정(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시 현행 평가방법 유지)
 - 3) [주식 평가방법] ① 또는 ②
 - ① (① 요건 해당 시) $\text{Max}\{(\text{평가기준일 전후 2 개월 평균액}) \times 1.3, \text{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 개월간, 1 년간, 2 년간, 3 년간, 4 년간, 5 년간, 6 년간, 6 년 6 개월간 각각의 평균액}\}$
 - ② (② 요건 해당 시) $\text{Max}\{\text{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 개월간, 1 년간, 2 년간, 3 년간 각각의 평균액}\}$

〈개정이유〉 주가 누르기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상증법 §35③)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범위 확대〉

-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의 양도거래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제외 대상 양도거래에서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미해당하는 사유의 예외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주가 누르기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소득법 §17·§94, 소득령 §27, 법인법 §16, 법인령 §12)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의 의제배당 규정 신설〉

- 의제배당 범위에서 자기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외
 - * 자기주식, 자기출자지분
-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 범위에 포함
 - *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제외(단, 시간외 대량매매,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포함)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법인법 §17·§20)

〈자기주식등 처분손익 익금·손금 불산입 추가〉

- (익금불산입 대상 추가) 자기주식등 처분이익
- (손금불산입 대상 추가) 자기주식등 처분손실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소득법 §17③, 법인령 §17 의 2⑤)

〈이중과세 적용제외 대상 추가〉

- (배당소득가산(Gross-up)이 적용 제외되는 배당 추가)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 제외되는 배당 추가)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법인령 §88①, 상증법 §39·§39 의 2)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 증여예시 유형에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 처분 포함
-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 처분 포함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조세회피 방지

○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소득령 §46, 법인령 §13)

〈자기주식등 취득의 귀속시기 규정〉

- 자기주식등 소각의 경우 제외
- 자기주식등 취득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 현물출자등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조특령 §35 의 3)

〈과세이연액 추정 예외사유 신설〉

- 적격합병(지주회사+현물출자한 법인)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 최초 현물출자한 주식(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
- 이전하는 압축기장충당금 계산식: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x 자기주식 소각 시 잔존 자회사 주식수 / 최초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수
- 위 계산식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외 금액(소각시점 이전 처분된 주식분)은 5 년간 분할 익금산입

〈개정이유〉 구조조정 지원

○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27)

〈실효세율 판정기준 완화〉

- 실효세율(A)*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A < 15%)으로 조정

* 외국법인 실제부담세액 / 외국법인 실제발생소득

〈개정이유〉 CFC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수준으로 합리화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94①)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포함〉

*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에서 어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저율과세되는 경우,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국가가 추가로 과세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국조법 §91④)

〈한도 인상 등〉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중복 부과 배제)

- (과태료 한도) 1 억원 ⇒ 10 억원
- 〈개정이유〉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납세편의 제고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소득령 §83②, 법인령 §41①)

〈기준금액 상향〉

- (경조금) 건당 20 만원 ⇒ 30 만원
- (경조금 외) 건당 3 만원 ⇒ 5 만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1 주일 이내 단기간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상향〉

기한 후 신고 시점	적용기한
1 주일 이내	75%
1 주 ~ 1 개월 이내	50%
1 개월 ~ 3 개월 이내	30%
3 개월 ~ 6 개월 이내	20%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시 감면율 상향 조정〉

- 50% ⇒ 70% 감면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세무동향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정부는 7.14(화) 제 30 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7.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국내생산 촉진

-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 *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생산 초기 결손으로 인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국토대전환

- 지역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26.3 분기)
- (세제)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기회발전특구 등 활용) 지원, 근로자 세제지원 시 지방 우대

○ 지방창업 촉진

-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손실위험 완화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대폭 강화
 - *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 상향(신주 투자액의 5 ⇒ 7%)

○ 지방성장기반 마련

- (세제)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
- (기업)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생산적 활동(R&D·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개편(예: 기본 세액공제율 × 지역별 계수)
-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천지원금 비과세*
 - * (일반)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
- (창업)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 중소기업의 투자·성장 촉진

- (세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시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 신설

○ 안전관리 인센티브 강화

-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 특례 도입(기준내용연수 50% 단축), 첨단 안전기술 활용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27.上)
 - * 연구개발공제율(%):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 투자세액공제율(%):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세청,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을 위한 5 대 핵심과제 추진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 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7.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효율 혁신
 - 국가 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 대한민국 재정혁신을 선도하고, ‘국세 징수 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
- 국민과 함께 하는 체납관리 혁신
 - 1 만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여 130 조 체납에 대한 실태확인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① 조세정의 실현, ② 재정확보, ③ 생산적 일자리 확충, ④ 체납 일제정리, ⑤ 복지대상자 발굴 등 체납 관리단의 ‘1 석 5 조’ 정책효과를 극대화
-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밀착 지원하는 한편,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 년까지 확대하는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 억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기존 6 월)하여 성장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

국세청, 12 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은, 12 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월 31 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8.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12 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 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 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 (중간예납 방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② 상반기('26 년 1 월~6 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②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 납부기한 직권 연장

- (대상)
 - ①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으로 전년(25 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②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전년(25 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③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25 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8 월 31 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8 월 31 일에서 11 월 2 일로 2 개월 직권 연장

예규판례

[법원] 상호 주식취득과 모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인지 및 해당 주식의 법인세법상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 두 34641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상법 제 342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지(적극) 및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 342 조의 2 제 1 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1 항 제 2 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 사안

원고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37.43%를 매수하였고, 이와 동시에 A 회사는 원고 회사의 주식 65.4%를 매수하여 모회사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상법 제 342 조의 2 제 1 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A 회사 주식의 취득은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자,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상법 제 342 조의 2 제 1 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사유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1호)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를 들고 있음 (…)

위와 같은 상법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 342 조의 2 제 1 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 342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임(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다 44109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법 제 342 조의 2 제 1 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 342 조의 2 제 1 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2 조 제 4 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1 항 제 2 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함(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 두 12055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 두 312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을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을뿐더러,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그 기업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은 무수

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무수익 자산의 매입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음

[법원] 2 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 두 30340 판결, 상고기각)

■ 쟁점

2 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적극)

■ 사안

원고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중국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고, 이와 같이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였다가, 그 후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며 피고에게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당초의 계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4 조 제 7 항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 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법인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때에 위 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7 항 역시 국가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정하면서, 결손금을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지에 대해 별도의 내용을 두지 않고 있음. 따라서 2 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정할 때 어느 외국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및 공제한도가 마련된 목적 및 취지를 토대로 체계조화적으로 그 결론을 도출함이 타당함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 두 5613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7 항의 위임에 따라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7 항이 적용될 때에도, 위와 같이 우리나라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전면적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과 더불어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인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제도의 기본 전제는 일관되게 유지·관철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만일 내국법인의 어느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외국의 국외사업장에서 생긴 소득금액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해당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나아가 국내 법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의 기여로 생긴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셈이 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는 결과를 낳음.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의 입법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결손금을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리적임

결국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 중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의미를 함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국외원천소득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중이 100%를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어느 국외사업장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위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면, 그 분자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 역시 조정·감축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고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에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원]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 두 30351 판결, 상고기각)

■ 쟁점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1 조 제 1 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안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로부터 15~20m의 도로를 사이에 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 사건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1 조 제 1 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1 조 제 1 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 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구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 15899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3 조 제 1 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 누 14753 판결 등 취지 참조]

원심은, 지방세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1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위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쇼핑몰 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 소유 명의를 다르며 이 사건 쇼핑몰과 일정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법원]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로 결제하고, 원고가 해당 포인트 결제액을 보전받은 경우 그 보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 두 34707 판결, (일부)파기환송)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 11873 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 152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 27838 호로 개정되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 조 제 1 항 제 9 호 (나)목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2017. 12. 19. 법률 제 15223 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그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41 호로 개정된 것) 제 61 조 제 2 항 제 9 호 (나)목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사안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신용카드사들과 사이에, 고객이 신용카드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의 부담으로 고객에게 신용카드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1 차 거래), 이후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면(2 차 거래)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물품가액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가만 수취한 후 그 대가에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합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함. 원고는 고객이 원고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원고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과세기간(2017. 4. 1. 이후 거래분부터 2019년 제1기까지)에 한정됨. 해당 부분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

판결요지

1) 법률 개정 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1 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5 항 제 1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도 없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 두 81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6 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과의 1 차 거래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준 경우,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2 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함께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2 차 거래 이후 사업자들 사이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1 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2 차 거래에서 할인된 가액을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2 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그런데 2017 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마일리지 등을 그 조문 자체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그 외의 것에 해당하

는 이른바 ‘제 3 자적립마일리지 등’의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 후자에 해당할 경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전자와 달리 취급되도록 하였음. 이는 상위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1 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 3 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위 제 29 조 제 5 항 제 1 호에 저촉될뿐더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은 개별적인 거래유형에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특히 제 6 호에서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1 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까지 그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임 (…)

따라서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2) 법률 개정 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의 효력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 두 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가 2017. 12. 19. 법률 제 15223 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면서 그 법문에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근거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 각 조항의 내용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규범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2017년 개정 전과는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봄이 타당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가 개정되기 이전부터 제 3 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미 도입되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위헌·위법성 논란을 불식하고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반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이는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입법자가 2017년에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를 개정한 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함. 그렇다면 입법자는 2017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통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새로운 위임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낸 것이고,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3 항 제 6 호를 위임의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그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경정청구 당시 기술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판청구 진행 중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 중 3689, 2026.6.2., 결정)

■ 쟁점

쟁점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8%)을 적용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제율(3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경정해달라는 취지로 2025.3.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성장·원천기술 심의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5.30.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성장·원천기술 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일(2025.3.28.) 이후인 2025.6.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5.12.24.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신청내역 및 금액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연구개발비를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지 않은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 25 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영세율 상호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 서 1840, 2026.6.11., 취소)

■ 쟁점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9 년 제 2 기부터 2023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소재 법인(이하 “중국현지법인”)에 국내 000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하고 수취한 000 원(이하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중국 과세당국이 중국의 000 제공자가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000(이하 “역방향용역”)에 대해 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대응세목)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 조 제 2 항 제 1 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일반세율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2019 년 제 1 기~2023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3., 2025.7.1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증치세면세정책규정 제 2 조는 해외 단체에 제공되고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중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해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 7 조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경우에 대해 ① 서비스의 실제 수령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무형 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되고, 국내의 화물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역방향용역과 관련하여 증치세면세규정에 대해 중국에서 현실로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중국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치세 규정 등에 근거하여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용역의 수행지 또는 결과물이 중국 외에 귀속되어야 증치세가 면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증치세면세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역방향용역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특허권 권리의 효력 발생 또는 사용이 아닌 이를 취득·유지하기 위해 제공된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소비 주체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서 증치세 관련 규정이 2016 년 도입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역방향용역에 대해 실제로 증치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실무 자료 등에 따르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면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고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역방향용역이 중국 내에서 증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보수체계 개편으로 기본급에 편입된 중식비를 소득세법상 식사대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 서 2281, 2026.7.1., 취소)

■ 쟁점

청구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던 중식비를 2003년부터 기본급에 편입하였는데, 2024.3.11.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세 000원, 2025.1.2.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세 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년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중식대가 폐지되어 기준급여로 전환되었고 청구법인의 보수규정, 근로계약서나 지급명세서상 중식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2.18. 및 2025.6.10. 이를 각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3. 및 2025.7.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대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호에서 사내급식 등의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000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0년대 초반 정부의 공공부문 보수체계 단순화 추진에 따라 국책은행들은 중식대 등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청구법인도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던 월 000원의 중식비를 기준급여에 편입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단지 보수규정에는 기준급여에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노동조합 활동보고에 의하면 노사합의로 청구법인이 중식비를 기준급여에 편입한 것은 중식비를 폐지하고 다른 어떠한 성격의 급여 비목으로 전환하였다고보다는 중식비가 기준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상여금 등이 임금인상률에 반영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들로 구성된 2023년 제 6차 보수위원회 의사록(2023.12.28.)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청구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중식비를 기준급여에 포함하여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상호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기준급여에 월 000원의 중식대가 포함된 사실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한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도 나타나는 점, 2023.12.28. 월 000원의 중식비가 기준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2024년 보수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이는 2000년대 초반 정부의 공공부문 보수체계 단순화 추진 결과 이미 기본급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중식대를 노사합의를 거쳐 확인하고 있는 개정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같은 국책은행인 B은행, C은행, D은행은 모두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준급여에는 월 000원 식사대 범위에서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재정경제부] 상속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 제 3 호의 2 신설 전 불균등 감자 거래에 대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 및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74, 2026.7.3.)

■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제 3 호의 2 의 적용시기

■ 사실관계

-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해 甲법인에게 이익 발생
- 甲법인의 지분은 지배주주 A가 57.5%, 지배주주의 친족인 B, C, D, E가 42.5% 보유 ⇒ 甲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
- 감자 전 乙법인의 지분은 甲법인의 지배주주인 A가 96%, 甲법인이 4% 보유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배주주 A의 특수관계인
- ‘24.8 월 乙법인은 A의 乙법인 주식 59.6 만주를 시가 대비 낮은 대가로 감자 ⇒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의 지분 가치 상승(甲법인은 ‘24 년 법인세 신고 때 해당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납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 20777 호) 제 45 조의 5 제 1 항 제 3 호의 2 는 같은 법 부칙 제 2 조에 따라 2025.3.14.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가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조특법 제 16 조의 4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 16 조의 3에 따른 납부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021, 2026.5.29.)

■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조특법 §16의2 비과세특례 2억원 적용 후 초과하는 행사차익 24억원에 대하여 조특법 §16의4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같은 과세기간에 처분한 경우(1년 미만 보유) 조특법 §16의3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3.3 경 (주)○○○(이하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청구권(10,000 주, 주당 행사가액 25,000 원)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최고기술책임자로 입사하였음
- 신청인의 주식매수청구권은 '24년 해당 주식 5배 분할로 인해 50,000 주(주당 행사가액 5,000 원)로 변동됨
- 신청인은 '25.3.29 주식매수청구권 중 40,000 주(이하 '쟁점주식')를 행사함(행사일의 1 주당 시가 70,300 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조특법§16의2 비과세 특례(2억원) 적용 후 남은 행사차익에 대하여 조특법 §16의4 과세특례 신청함
- 신청인은 '25.12 경 쟁점주식을 모두 처분함(1년 미만 보유)

회신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신청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 조의 3 제 5 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청]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792, 2026.6.24.)

■ 질의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사실관계

- 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목적지 인도 조건(Delivered At Place, DAP)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해당 재화의 수입신고 및 통관은 신청법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고,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 및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청법인임
- 다만, 계약상 수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신청법인이 먼저 납부한 후 외국법인에 청구함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34

jikim@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